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'22년 2분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

코트라 투자종합상담실 고용노동부 파견관 김영심 서기관



- 법 제·개정으로 바뀌는 '22년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 안내
- 주요 내용은 ①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,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(2022.4.14. 시행), ③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신설(2022.5.19. 시행), ④ 2022년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 본격 추진 및 신청 접수(~4월말), ⑤ 중소기업을 위한 「중대재해 안내서」 발간·배포(2022.3.17.), ⑥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(연중 상시 접수)

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['22년 2분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]

1.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(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)

- **(주요내용)** 올해부터는 30인 미만의 기업도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 규정*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 제외**) 및 대체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.
 - *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1930호, 2022.1.1. 시행)
 - **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(통상적으로 '일요일')을 부여하므로 공휴일 중 일요일은 제외
- 종전에는 민간기업(근로자)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,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~2022년부터는 기업규모*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다.
 - * (시행시기) ▲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: 2020.1.1. ▲ 30~299인: 2021.1.1. ▲ 5~29인: 2022.1.1.
-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('휴일대체')할 수 있다.
-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, 근로자가 공휴일(대체공휴일 포함)에 근로를 했다면,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.
 - * ▲ (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) 50% 가산 → ▲ (8시간 초과시) 100% 가산

2.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('22.4.14. 시행)

- **(주요내용)** 30인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어,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.
- 개정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(최저임금 120%미만)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%(3년 한시)를 지원한다.
-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의 수수료(수수료율 0.2% 이하)가 적용될 예정이다.

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 ['22년 2분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]

3.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신설('22.5.19. 시행)

- **(주요내용)** ▲ 근로자가 모집·채용,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, ▲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,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.
- 개정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차별적 처우 등*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
 - 노동위원회는 조사·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,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.
 - * 고용상 성차별,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
-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4. 2022년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 본격 추진 및 신청 접수(~4월말)

- **(사업개요)**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.
- **(지원대상)**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50명미만 사업장의 사업주
- **(위험기계 교체)**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, 리프트, 30년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(6종)*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
 - * 프레스, 사출성형기, 크레인(타워크레인 제외), 전단기, 컨베이어, 롤러기
- **(위험공정 개선)** 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② 끼임·추락 고위험 3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
 - ①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
 - ②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18),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(209),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(229)

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['22년 2분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]

■ (지원내용)

구분	위험기계 교체	위험공정 개선
지원 품목	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·설비의 교체	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
지원 비율	총 소요비용의 50% 이내	
지원 한도	최대 7천만원	최대 1억원
자부담금 납부	금융방식(리스, 할부)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※ 이동식 기계 교체는 금융방식(리스, 할부)으로만 가능	

- **(지원신청)**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'22. 4월말까지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 누리집(anto.kosha.or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
 -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에서는 중소기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주는 리스, 할부,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
 - 특히,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(금리: 1.5%, 3년거치 7년 상환)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.
 - 자세한 사항은 「안전투자 혁신사업」 누리집(anto.kosha.or.kr)을 확인하거나, 대표번호(1644-4555)로 문의하면 된다.

5. 중소기업을 위한 「중대재해 안내서」 발간·배포(2022.3.17.)

-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「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」 안내서를 배포하였는데, 중소기업이 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.
 - 「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」는 법 조문순서에 따라 (1) 제정취지와 (2) 실행방법 그리고 (3)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.



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

['22년 2분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 제도]

-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(양식)과 우수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.
 - * 제공 사례 또는 활용 서식: 11개분야 40여개
- 또한, 안전·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한편,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
- 아울러, 기업의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사례들도 소개하면서, 기업의 규모, 작업방법 및 근로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.
- 고용노동부는 「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」를 누리집* 등에 게시하고,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「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**」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.
 - *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(<http://www.koshasafety.co.kr>), 고용노동부 누리집(<http://www.moel.go.kr>)
정책자료 - 정책자료실, 한국산업안전공단 누리집(<http://www.kosha.or.kr>) 알림소식- 공지사항
 - ** 「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(<https://media.kosha.or.kr/main>)」: 안내서 책자 배송은 한정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, 신청기업이 기본택배 배송료 3,000원 부담(자료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)
(문의 02-6942-9450)

6.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 및 접수(상시)

-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'일'과 '일하는 방식의 변화'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「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」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.
-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,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.
-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*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.
 - * ①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, ②작업조직/작업환경개선, ③고용문화개선, ④장시간근로개선, ⑤평생학습체계구축, ⑥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, ⑦임금체계구축, ⑧평가체계구축, ⑨안전한일터구축
 - ※ 노동전환 특화컨설팅 시험 운영
- 컨설팅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, 연내 1,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.
-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(www.nosa.or.kr)을 통해 가능하며, 사업문의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(02-6021-1187, 1229, 1027)으로 문의하면 된다.